



Vol. 10

2023.10.13.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송미심전임 mssong@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I. 법령 개정사항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동물성 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 (제2조제1호의2 신설)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을 제외한다) 중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 기간의 연장 등 신설 (제5조제5항)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약처장에게 신청함으로써 2년의 범위 안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을 하게 함.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 기간 연장 등 신설 (제7조제5항)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약처장에게 신청함으로써 3년의 범위 안에서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위생평가의 범위 확대 등 (제11조)	제11조 제목 및 본문에서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정비하면서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

구분	내용
	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생략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함.
수입식품 수입시 식약처 신고 예외의 경우 신설 (제20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들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규정 신설 (제20조의2 신설)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되게 함으로써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화함.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제25조의4, 제25조의5)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출식품등 수출업자의 국내제조업소 등록 시 지원방안 확대 (제38조)	수출식품 등 수출업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的 방법만 규정되었으나,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및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방안을 확대함.

## (3) 시행일

'23.09.14

## I. 법령 개정사항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 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규정 신설 (제29조의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을 “법 제20조제3항,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불일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별표 9 제2호 가 내지 각목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 및 현장검사 대상물품 등”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으로 범위를 규정함.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9의 방법으로 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 등)하며, 자동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
해외작업장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16호)	신청서 내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란에 적용 시스템 항목 중 “GMP와 GFSI” 추가하여 서식 변경

## (3) 시행일

‘23.09.14

**I. 법령 개정사항****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를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명확히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그 변경이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명확화 (제4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명시함.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기한 연장 (제24조 4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에서 “그 변경이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로 연장함.

**(3) 시행일**

'23.09.01

## I. 법령 개정사항

## 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최초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변경보고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보고도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해당 위생용품의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국·국외제조업소·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일회용 컵·숟가락·포크 등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재질이 동일한 일회용 컵·숟가락·포크 등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자가품질검사를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사항의 변경 보고기한 확대 (제6조 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 중 '제품명,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기한을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로 확대함.
전년도 생산실적 등 보고기한 연장 (제11조)	전년도 생산실적 등 보고기한을 "매년 1월 31일까지"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함.
부적합 수입위생용품에 대한 조치방법 확대 (제14조 1항)	검사결과 부적합통보를 받은 수입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존에는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하도록 조치방법을 확대함.

구분	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 건처리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신설 (별표1 제2호 바목)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원료 또는 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신고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서류검사 대상 확대 (별표3 제1호 가목5)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위생용품으로서 “일회용 컵·술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상호간에는 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조국·국외제조업소·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서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가품질검사 (별표5 제1호)	별표5 제1호에 “재질이 동일한 컵·술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가품질검사를 품목별로 진행하던 것을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23.09.07

---

**I. 법령 개정사항****5.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추가 (별표6)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부산물 비료 등 “우수재활용제품” 25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를 추가 함.

**(3) 시행일**

‘23.09.07

## II. 입안예고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 (1) 입안 이유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의 재정비 (제42조1항 8호, 제52조1항 1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재정비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기준 완화 (제31조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에서 "90퍼센트 이상"으로 기준 완화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보완 (별표 12 제6호가목2))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별표 12 제6호가목2)가) 반가공 원료식품 기준 삭제

## (3) 의견수렴기간

2023.10.23

**II. 입안예고****2.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계획****(1) 입안 이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의 정의 명확화 (제2조5호)	제2조 5호 본문의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자,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용어에 대해 각각의 개별적인 정의 신설.
용역 범위 재정비 및 신설 (제3조)	제3조1호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으로 재정비하고, “지식기반 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신설.

**(3) 의견수렴기간**

2023.10.30.

## II. 입안예고

##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1) 입안 이유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반도체 등 국가첨단 산업의 수출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세공장 특허대상 규정 재정비 (제4조)	제4조 본문에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으로 변경하고 1호에서 “수출하는”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으로, 2호에서 “공장으로”를 “공장의 경우”로 변경함에 따라 내수용 보세공장도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수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을 명확화.
특허요건 완화 (제5조)	특허요건에 있어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공정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게 함으로써 물품검사 공정이 없거나 보세공장 외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을 완화함.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의2)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위원이 특허신청인과 최근 3년 이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게 하는 등 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함.
임차시설 포함 면적의 특허기간 (제9조 2항)	임차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도 매 임차기간 종료 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구분	내용
물품의 간이한 반출입 절차 적용 확대 (제13조 6항)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는 장소로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추가함에 따라 보세공장간 간이한 반출입절차 적용을 확대함.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비축·보관·판매를 위한 경우 “다른 보세구역 또는 동일 법인의 보세공장”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른 보세구역 또는 보세공장”으로 수정함으로써 동일법인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으로도 반출을 가능하게 함.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규정 삭제 (제17조 3항)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반입일로부터 1년)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으로 함으로써 재고 비축 등 운영을 지원함.
사용신고 갈음 규정 명확화 (제18조 1항)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별지 제18호의3 서식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 “다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추가함.
포괄 장외작업 허가규정 명확화 (제22조 3항 2호)	“장외작업장과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에서”를 “장외작업장,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간에 한 곳 이상의 장외작업장 등에서”로 여러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장 간 모두 가능함을 명확히 함.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확대 (제30조)	제330조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입주기업체 및 복합물류보세창고”로 수정함으로써 보세공장과 복합물류보세창고 간 보세운송에도 특례(자동수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
잉여물품의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단서규정 신설 (제33조 4항)	잉여물품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때까지 잉여물품확인서를 사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물품의 신속 반출을 지원함.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에 관한 규정 정비 (제37조 1항)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보세공장특례를 잠정중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개선계획서 등을 받아 심사 후 특례적용할 수 있게 함)

구분	내용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에 관한 규정 정비 (제37조 1항)	기존에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반입 또는 보세 공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품 반 출입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으 로 전환하여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로서 “장외일시장치 장과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신고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외장치장과 장외작업장에서 긴급히 수출되는 무상 견품에 대해서도 보세 운송절차를 생략도록 하여 수출계약 성사 등을 지원함.
운영인의 주의 및 경고규정 완화 (제44조 1항)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등은 보세공장 반입 후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은 운영인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3) 의견수렴기간

2023.10.15.

---

### III.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9027.90-9099 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 3926.90-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8.1.30.부터 2022.6.24.까지 000에 소재한 000(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000(화학반응 용기 000 등 2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3926.90-9000호(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27.90-9099호(양허관세율 0%)의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면서,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9027.90-9099 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세율표 제 39 류 주 제 2 호 버록에서 제 90 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0 류 주 제 2 호 나록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AAA 사의 면역분석 장비 000 예만 전용·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분석기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 9027 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 3926 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3) 결정일

2023.09.05. (조심 2023 관 0047)

## IV. 품목분류변경고시

## 1. Jet Projecting Machine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Jet Projecting Machine; Ultrahigh-Pressure Pump
물품 설명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 분사기
HS CODE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3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변경 사유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제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9.01.

## IV. 품목분류변경고시

## 2. Dispersion Polymer(CD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Acrylamide copolymer; Dispersion Polymer (CDP), SL-800
물품 설명	폐수처리 고분자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백색 에멀션(emulsion)상태의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6.90-9000호</li> <li>-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06.90-1000호</li> </ul>
변경 사유	단일 중합체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체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응집제, 지력증강제,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일종이므로 제3906.90-1000호로 분류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9.01.

## IV. 품목분류변경고시

## 3. Salt water;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alt water; MODOPS 물죽염
물품 설명	정제수(77%)에 죽염(23%)을 녹여 희석한 액체 상태의 식염으로 조리시 첨가하여 사용(내용량 330ml)
HS CODE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1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90호
변경 사유	건조나 탈수,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친 분말이나 결정체 태의 식염이 아니므로 제2501.00-909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9.01.

## IV. 품목분류변경고시

## 4. Peanut bar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물품 설명	혼합한 땅콩(53%)과 참깨(7%)에 설탕, 꿀, 시럽 등을 버무려 특정 형상으로 조제한 식품류 (내용량 55g)
HS CODE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11-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변경 사유	혼합한 땅콩과 참깨에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이므로 제2008.19-9000호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9.01.

## IV. 품목분류변경고시

## 5. DN8 FRT DR STEP L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DN8 FRT DR STEP LH; 85875-L1500
물품 설명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안쪽 스텝(스커프) 부분에 덧대어 지는 철강 재질의 판으로 특정 상품명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음
HS CODE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10.00-0000호
변경 사유	금속판에 특정 차량명(상품명)이 새겨진 명판 (name plate)의 일종이므로 제8310.0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3.09.01.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 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 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 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 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 억원)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중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 억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안전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 사례	
● <u>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에센셜 오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정성 및 효능·효과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가습기용'으로 홍보, 판매함. (4백3십만여개, 179억원 상당)</li> </ul>
● <u>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고압가스용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통관 '검사 대상'임에도 '검사 생략'으로 허위신고하고 수입한 후 국내 유통시킴(반도체 제조공장 등) (2만2천여개, 66억원 상당)</li> </ul>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연내 최대 181 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협력 면제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 수출기업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확대
- 1 조원 규모 「케이(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 부산항 신항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 확대 지원

정부는 9.4 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 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 일에서 5 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합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 억원 추가 조성합니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1 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 중미 6 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를 통해 수출 확대 및 북중미 진출 가속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테말라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중미 5 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 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하였습니다.

\* 상품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 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 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키로 합의

구분	내용
협상 타결 의의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는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임.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과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하여, 한국 원부자재·중간재의 관세 혜택 및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활용한 미주 지역 진출 확대가 기대됨.</li> <li>- 원산지 누적 인정 등 한-중미 FTA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중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원료 조달 등 한국-중미 6개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li> <li>- 기존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을 수용함에 따라 상품·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li> <li>- 과테말라 정부조달 시장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도 예상됨.</li> <li>-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EU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의 FTA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li> </ul>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구분		'18	'19	'20	'21	'22
수 출	금액	237	222	203	384	323
	증가율	△1.7	△6.3	△8.6	88.8	△15.9
수 입	금액	67	64	78	138	131
	증가율	△40.2	△4.5	21.9	77.2	△5.0
무역규모		304	286	281	522	454
증가율		△13.9	△5.9	△1.8	85.8	△13.0
무역수지		170	158	125	246	192

## &lt;주요 교역 품목(2022년 기준)&gt;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 MTI 4 단위

순 위	수 출 (한→과)			수 입 (과→한)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승용차	39	12.1	커피류	68	51.9
2	경유	38	11.8	니켈광	14	10.7
3	화물자동차	32	9.9	동괴및스크랩	10	7.6
4	합성수지	29	9.0	과실류	10	7.6
5	의약품	19	5.9	편직제의류	10	7.6
6	면사	16	5.0	알루미늄괴및스크랩	9	6.9
7	건설중장비	14	4.3	기타 전기부품	5	3.8
8	기타정밀화학제품	13	4.0	고철	2	1.5
9	염료	13	4.0	종자류	1	0.8
10	편직물	11	3.4	직물제의류	1	0.8
	10대 품목 합계	224	69.3	10대 품목 합계	130	99.2
	전체 합계	323	100	전체 합계	131	100

## &lt;교역현황&gt;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 24’ 시행

- 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전자심사 24’ 시스템 9월 14일 개시
- 자동수리 적용 품목은 식품첨가물…향후 적용 품목 단계적 확대 추진
- 서류검사 시간 단축(최대 48 시간→5 분 이내)돼 업무처리 시간·비용 절감
- 또한 행정 효율 향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되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수입식품 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 24(SAFE-i24)’ 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전자심사 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 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상 요건 : ①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②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또한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자심사 24’를 이용하기 위한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 정보마루 ([www.impfood.mfds.go.kr](http://www.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 관련 고시 개정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추가
-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 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 25 개 품목에 대해 9월 7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 (9.7일 시행)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도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제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간편인정'에 추가된 '우수재활용제품' 품목 및 인증서류>

구분	내용
대상품목 (25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재활용 메타크릴산메틸(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폐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폐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인증서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아세안 3 대 수출 대상국 필리핀과 교역 자유화
- 한국산 자동차, 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 아세안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 완성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7(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준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준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대부분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의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준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용)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통관절차 간소화의 법적 기반 마련…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2023.9.10.(일)자로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8. 어린이제품 안전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를 국내공장 25 만원·해외공장 6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인하
- 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9.15.(금)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 만원·해외공장 60 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 만원으로 인하되며,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 만원·해외공장 48 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 만원으로 인하됩니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습니다.

## &lt;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개요&gt;

구분	내용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대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타법에서 소관하는 품목은 제외	
관리체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수입)자가 시장출시(통관)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표시	
절차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KC 마크	
안전 관리	안전인증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후 KC 마크를 표시 (2년 단위 정기검사)
	안전확인	제조·수입자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 마크를 표시 (유효기간 5년)
	공급자적 합성확인	제조·수입자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KC 마크를 표시

---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9. 한-우즈벡 공급망 협력 토대 마련

-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와 중앙아시아 최초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와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TIPF는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으로는 처음입니다.

\*체결실적: 아랍에미리트(UAE)(1.15), 도미니카공화국(4.7), 흥가리(4.18), 바레인(5.13), 폴란드(7.13), 마ダ가스카르(8.28)

TIPF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으로써 상호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신뢰를 쌓거나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 이슈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TIPF는 관세양허부분을 제외하고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공급망·디지털·바이오 등 분야의 협력을 강조

특히, 희소금속인 몰리브덴(매장량 세계 12위), 텉스텐(매장량 세계 7위)이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의 TIPF는 향후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0. 베트남 홀린 K-의료제품, 화장품으로 협력 이어간다

- 베트남 규제당국자 방한,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업무 협의 추진
- 베트남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 요청
- 맞춤형화장품 등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체계 우수성 홍보
- 베트남 규제당국자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 견학, 베트남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베트남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이며,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수렴했으며, 이번 협력회의에서 베트남에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회의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1. 의료기기 민원행정 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 영문 증명서 재발급, 시스템이 자동 검토해 신청 즉시 발급
- 고유식별코드(허가정보)와 요양급여코드(보험정보)를 한 번에 검색
-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행정 업무 혁신 지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9월 11일부터 '의료기기 영문 증명 재발급 자동화'와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요양 급여코드(EDI)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간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재발급은 사람이 직접 발급하다 보니 처리까지 최대 3일까지 걸렸으나, 앞으로 영업자가 자동 발급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판단해 적합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이전 발급정보가 있어야 함, ②업 허가 증명서는 직전 발급 후 변경사항이 없어야 함, ③품목 허가 증명서는 직전 발급 후 변경 사항이 없어야 함

종전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공급내역보고, 추적관리, 보험 청구 등 업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코드(이하 UDI)는 식약처로부터, 요양급여코드(이하 ED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따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UDI, EDI 등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UDI-EDI 연결 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고자 공공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물품 코드까지 연결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자동 재발급 신청'과 '의료기기 UDI-EDI 코드 검색 서비스'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전자민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자동 재발급 신청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의료기기전자민원([udiportal.mfds.go.kr/msismext](http://udiportal.mfds.go.kr/msismext)) > 공지사항

---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2.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 제 11 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 한-유럽연합(EU) 교역·투자 확대 지속, 유럽연합(EU) 의료기기법 기업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21.(목) 「제 11 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해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94.5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머크·사토리우스 등 유럽의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對)유럽연합(EU)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양국이 교역·투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유럽연합(EU) 약사법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제안한 핵심의약품법의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사항을 논의하였으며,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EU 의료기기법(MDR)의 인증기관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3.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고시
- 해외제조업소의 생산 현황 등 현실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 탄력적 적용
-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3년)
-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강화와 현지 위생평가 실효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현지 제품 생산 상황을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 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월 26일 개정 고시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주요 내용은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수입 중단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3년) 등입니다

그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외제조업소가 위생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에 수입실적이 없으면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것을 재수입 시점부터 4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총점의 95% 이상)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생평가 주기를 연장했습니다.